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관할청의 휴업명령 사유 구체화〉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57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관할청의 휴업명령 사유 구체화(안 제64조제1항) ..... | 2 |
| 2. 개정안 부칙 .....                      | 5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2. 29.

3. 회 부 일 : 2025. 12. 3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지역 재개발,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상황을 휴업사유로 해석하거나 같은 재해 등 상황에서도 학교와 교육청별로 휴교결정을 달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 Ⅲ. 검토의견

#### 1. 관할청의 휴업명령 사유 구체화(안 제64조제1항)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관할청이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감염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br>① 관할청은 <u>재해 등의</u>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br><br>② ~ ④ (생략) |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br>① ----- <u>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br>-----<br>-----<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관할청<sup>1)</sup>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호우(豪雨)와 같은 자연재난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1)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생한 경우 휴업명령이나 휴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를 휴업사유로 해석하거나 같은 재해 등 상황에서도 휴업명령을 달리하고 있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업명령 사유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관할청의 휴업명령 사유로 천재지변과 감염병을 명시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우 천재지변 및 감염병은 재해의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sup>2)</sup>,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휴업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사유를 열거하려고 하는데, 휴업 사유는 재해뿐만 아니라 안보위기 등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휴업 명령 사유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천재지변을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으로 정의하고 있음.

를 구체화 하기보다는 현행법과 같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사정과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휴업 명령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긴급한 사유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관할청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오히려 긴급히 휴업을 명해야 하는 지역의 다양한 상황을 포섭하지 못할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응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 개정안 부칙

###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조문]

| 안 부칙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부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sup>3)</sup>,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긴급한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안 부칙과 같은 유예기간이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3)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